

정보시스템감리와 회계감사의 적정성 비교

권호열

강원대학교 컴퓨터학부

e-mail : hykwon@kangwon.ac.kr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the Accounting Audit

Ho Yeol KWON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정보시스템감리와 회계감사에서 감리 및 감사의 적정성은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감리와 회계감사의 목적과 특징, 수행 절차를 살펴보고, 감리 및 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비교하였다.

1. 서론

최근 정보화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보편화되었으며,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품질을 중심으로 한 정보시스템감리와 함께 업무시스템의 정보화 효과에 대한 가치평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갖는 재무적인 가치평가를 다루는 회계감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실체의 경제적 행위와 사건들에 대하여 경영자가 주장하는 바와 관련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주장과 사전에 설정된 기준과의 일치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회계감사[1] 체계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감리 체계와 비교하면, 정보시스템감리와 회계 분야의 융합적인 관점이 새로 얻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감리와 회계감사에 대해서 목적과 대상, 업무 범위, 수행 절차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감리 및 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정보시스템 감리와 회계 감사의 비교

2.1 개요

정보시스템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4]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5-7]

2.2 감리대상 사업과 감사대상 회사

정보시스템감리의 대상은 전자정부법[2] 및 동 시행령[3]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정보기술 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회계감사의 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5] 동 시행령[6]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이다.

2.3 업무 범위

정보시스템감리의 업무범위는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회계감사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한다.

2.4 감리인 및 감사인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하는 감리법인은 5명 이상의 감리원(수석감리원 1명 이상 포함),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기술능력, 재정능력,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감사반 등이다.

2.5 시행 시기

정보시스템감리는 원칙적으로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설계, 종료)감리를 할 수 있다.

회계감사에서 회사는 매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감리기준과 감사기준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표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표한다.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요건,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감사결과 의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다.

2.7 시행 절차

정보시스템감리의 시행절차는 감리계약의 체결,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감리 착수회의 실시,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감리 종료회의 실시, 감리보고서의 통보,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시정조치확인 등으로 구성된다.

회계감사의 시행절차는 감사계약, 감사계획수립,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의 평가, 감사증거 수집,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3. 감리 및 감사의 적정성 판단

3.1 제도적 환경

정보시스템감리에서는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감리법인의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계감사에서는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2 주요 현안과 해결 방향

정보시스템감리와 회계감사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여부와 적정성 문제는 핵심적인 현안이며, 감리 및 감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능력과 책임, 윤리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가적 판단의 재량권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부실한 감리 및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으로서 문제가 발생한 회계감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반면 정보시스템감리에서는 아직 책임감리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감리 및 감사담당자의 윤리 및 능력의 지속적인 교육, 문제 발생 사례의 체계적 원인분석 및 대책의 제도화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감리와 회계감사를 비교하였으며, 감리의 적정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 주제는 감리 및 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정보시스템 감리의 재무적 가치 평가, 감리와 감사의 통합적 시행방안 등이다.

참고문헌

- [1] 노준화, 회계감사의 이해, 도서출판 탐진, 2011.
- [2] 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4.12.
- [3]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20호, 2012.2.3.
- [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1호, 2012.3.2.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8호, 2009.2.3.
-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1.6.
- [7]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회계감사기준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2005. 2..